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중 소 기 업 창 업 지 원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종전에는 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창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은 추후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과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업 모델 또는 회사 형태의 변화가 빈번한 창업 현장에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음.

이에, 설립 시 창업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제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의 지위가 승계될 수 있도록 창업 인정 기준을 완화·확대하여,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 지위 승계(안 제2조제2항제2호)

- 1)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변경 후의 법인이 창업기업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

나. 창업기업 인정 기준 유연화(안 제3조제2항)

- 1) 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창업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중 “같다”를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각 호”를 “각 호 및 제2항 각 호”로 한다.

② 창업기업의 지위 승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

2.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변경 후의 법인에게 이전시킨 경우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내지 제2항”으로 한다.

② 제2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창업기

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위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본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으로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으로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2.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	나. ----- ----- ----- ----- 이 조에서 같다) ----- ----- ----- -----

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 -----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창업기업의 지위 승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 2.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변경 후의 법인에게 이전시킨 경우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 각 호 및 제2항 각 호----- ----- -----.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① (생략) <u><신설></u>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위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 ----- -----.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622